
II. 보험제도 변화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시행

-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6월 30일 통과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함)」 개정안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며,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퇴직연금시장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 개정 「근퇴법」은 퇴직금의 중간정산 요건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자를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로 확대함.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기타 천재지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립금 중도인출을 허용함.
 - 자영업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함.

- 퇴직금제도 가입자의 퇴직금은 IRP로 강제 이전되며, 확정급여형(DB형)/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도 IRP 가입이 허용됨.
 - 현재 퇴직금제도 가입자는 55세 이전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 수령 후 IRP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개정 「근퇴법」하에서는 이직 또는 퇴직 시 지급받은 가입자의 퇴직금이 IRP로 강제 이전됨.³⁾

○ 또한, DB/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연금수령액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IRP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를 통한 추가적 노후소득 재원 마련이 가능해짐.

■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유도를 위하여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DB/DC형 퇴직연금의 동시 가입을 허용함.

-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용관리상 편의를 위하여 DC형 퇴직연금제도에 한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하나의 표준형 퇴직연금계약에 여러 개의 중소기업이 가입하는 것이 허용됨.
- 현재 한 기업 내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가능한 반면 근로자 개인은 DB/DC형 중 하나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개정 「근퇴법」 하에서는 근로자가 DB/DC형을 혼합하여 가입하는 것이 허용됨.

■ 퇴직연금 모집업무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위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설계사를 퇴직연금 모집인으로 등록시켜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됨.

- 기존 「근퇴법」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권유하는 모집업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통해 퇴직연금사업자 업무의 하나로 모집업무를 수행함.
- 개정 「근퇴법」은 퇴직연금 모집업무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퇴직연금 모집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요건을 신설함.
 - 퇴직연금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업무범위, 준수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함.

3) 그러나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받은 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임.

- DB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금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사업 중단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를 신설함.
 -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의 최소적립금 상회 여부를 검증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최소적립금 하회 시 근로자 대표에게 통지토록 함.
 - 자발적인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말소 신청근거를 신설하고, 퇴직연금 사업 중단 시 가입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2.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관행 제한

- 금융당국은 2012~13년에 걸쳐 저축성보험에 대한 초년도 지급률을 제한하고 모든 보험의 신계약비에 대한 이연상각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기존 모집 수수료의 과도한 선지급 관행을 완화할 예정임.
 - 이러한 모집수수료 제도 변경으로 수수료 체계가 과도한 선지급에서 분급 형태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임.
 - 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 변경은 판매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 수수료 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것임.

가. 저축성보험 선지급 수수료 제한

- 2012년 4월부터 금융당국은 소비자 중심의 모집수수료 제도를 위해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에 대한 초년도 수수료 지급률 수준을 제한하여 해약환급률 수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임.
 - 동 조치의 주요 내용은 저축성보험 신계약 관련 모집수수료(α)를 판매 수수료(α_1)와 유지보수수료(α_2)로 이원화하여 유지보수수료를 계약 유지 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임.

- 구체적 시행안은 저축성 보험 신계약비 관련 판매수수료를 동 신계약비 중 70%를 한도로 초년도에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최대 7년 동안 유지보수의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함.
- 현행 제도하에서는 보험계약 초년도에 모집수수료 대부분을 지급함에 따라 저축성보험임에도 5~6월차까지는 해약환급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소비자불만을 야기함.

〈표 II-1〉 모집수수료 지급방식 개선안

$\text{모집수수료}(\alpha) = \text{판매수수료}(\alpha_1) + \text{유지보수}(\alpha_2)$	
α_1 : 초년도 지급률 70% 상한	α_2 : 이연상각 기간 내 30% 분할

주: 모집수수료는 신계약비, 판매수수료는 판매비용과 보험컨설팅비용의 합, 유지보수는 판매 후 고객관리비용을 의미함.

자료: 보험연구원 내부자료.

나. 이연상각제도

- 금융당국은 2013년 4월부터 모든 보험상품에 대한 신계약비 이연상각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선지급 관행을 간접적으로 완화하는 정책도 실시할 예정이다.
- 현행 신계약비 관련 이연상각제도는 신계약비 지출 전액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여 표준계약공제액을 한도로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최장 7년)에 걸쳐 상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반면, 변경안은 신계약비 이연범위를 기납입보험료와 표준계약공제액의 일정 비율(보장성보험 50%, 저축성보험 70%) 중 큰 값을 한도로 설정하도록 하며, 그 초과금액은 당기비용 처리하도록 함.

〈표 II-2〉 이연상각제도 변경안

구분		이연한도
현행제도		표준해약공제액 × 100%
변경안	보장성	Max (기납입보험료, 표준해약공제액 × 50%)
	저축성	Max (기납입보험료, 표준해약공제액 × 70%)

다. 제도 변경에 따른 기대 효과

- 이러한 소비자 중심 모집수수료 변경 계획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들의 정착률 및 전문성 제고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동 수수료 관련 제도 변경으로 저축성보험 초년도 해약환급률 상향 조정, 양질의 계약유지 서비스, 소비자에게 보다 적합한 상품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기존의 과도한 선지급 관행으로 설계사들은 고객 만족도보다는 높은 선지급 수수료가 있는 상품을 위주로 소비자에게 권유하는 경향이 있었음.
 - 한편, 동 제도 변경은 설계사들에게 계약유지 서비스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킨 반면, 잦은 이직에 대한 유인은 감소시켜 설계사들에게 전문성 제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그간 설계사들은 과도한 선지급 관행의 만연으로 높은 선지급 수수료를 제시하는 회사로의 이직이 잦아 보험계약 유지관리와 전문성 제고가 어려운 실정이었음.

3.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제정 추진

가. 경과 및 의의

- 정부는 소비자보호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1년 11월 21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융소비자법」이라 함)」 제정안을 입법 예고함.
 - 그간 판매규제가 부재한 영역(규제공백)이 발생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도 상이한 규제가 적용(규제차익)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상품 속성⁴⁾ 및 판매행위 속성⁵⁾을 재분류 및 체계화하여 ‘동일기능-동일규제’체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우리나라는 금융상품이나 금융업무 기능이 아니라 금융회사 종류를 중심으로 한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금융업권별로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함.
 - 최근에는 개별 금융권역을 넘어서는 복합금융상품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시급함.
 - 아울러,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기능별 규제체계는 향후 새로운 판매 기능 등장에 따른 규제공백을 제거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음.

나. 주요 내용

- (진입규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을 판매업무 유형별로 구분하여 직판업자, 대리·중개업자 및 자문업자로 규정하고 「금융소비자법」에서 일원화하여 등록·관리함.

4)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전, 저축은행, 신탁 등 금융법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으로 재분류함.

5) 현행 금융법상 금융회사 및 판매채널을 ‘직판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재분류함.

- (판매행위 규제)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광고규제, 이해상충방지 규제 등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총망라하여 규정함.
 - 상품유형에 따른 위험 및 특성을 감안하여 상품별로 규제적용 여부 및 구체적 규제내용을 차별화함.⁶⁾
 - 판매업자의 행위속성에 따라 위탁금지 규제, 고지의무, 이해상충방지 의무 등의 규제를 적용함.⁷⁾

- (신규업자 신설) 이해상충 방지 장치⁸⁾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체계를 갖춘 금융상품자문업⁹⁾을 신설함.
 - 금융상품자문업자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개인의 자산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함.
 -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와 같이 금융상품자문업의 대리행위는 금지됨.¹⁰⁾

- (신규업자 신설) 현재 별도의 법적근거 없이 금융권역별 모범규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대출모집인에 대해 등록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함.

- (상품속성 규제) 개별 금융업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총망라하여 모든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규제 원칙'을 규정함.

6) 예를 들어 ① 투자성상품의 경우 투자 위험, ② 예금성상품의 경우 이자율·중도해지 수수료, ③ 보장성상품의 경우 보험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를 설명해야 함.

7) 단, 개별 금융법과의 중복 및 상충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규정한 판매행위 규제는 개별 「금융법」에서는 삭제함.

8) 동일한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상품을 비교·자문하도록 규제(Whole of Market)하고, 자신과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금융회사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임.

9) 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및 자산운용 전략 등에 대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금융업인.

10) 대리행위를 금지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소속 재무설계사(개인사업자)를 통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직원을 통해서만 제공 가능함.

- (행위속성 규제) 상품 및 판매채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영업행위규칙 이외에 판매업자의 행위 속성에 따라 추가로 정의되어야 할 영업행위규칙을 규정함.

〈표 II-3〉 상품속성 규제의 주요 내용

원칙	개념
적합성원칙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 줄 원칙
적정성원칙	금융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한 상품이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적절하지 않을 경우 이를 알려주도록 하는 원칙
설명 의무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주요내용을 설명
구속성계약 체결금지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다른 금융상품도 같이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단정적 판단 또는 허위사실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금융상품 광고 시의 필수적 포함 사항과 금지 행위에 대한 규제

〈표 II-4〉 행위속성 규제(판매업자별 영업행위규칙)의 주요 내용

행위	개념
미등록자에 대한 위탁금지	법에 따라 등록된 대리·중개업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를 위탁하는 행위 금지
급부수취금지	직판업자에게 수령권한을 위탁받지 않고 금융소비자로부터 보험료, 투자금 등의 계약상 급부를 수취하는 행위 금지
재위임·재위탁금지	직판업자로부터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법령상 근거 없이 제3자에게 재위임·재위탁하는 행위 금지
비전속업자의 전속판매금지	둘 이상의 직판업자를 대리·중개하는 자가 금융소비자에게 어느 특정 직판업자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구매를 권유하는 행위 금지
수수료 이외 금품 등 수취금지	직판업자에게 정해진 판매수수료 이외에 추가적인 이익을 요구·수취하는 행위 금지
주요 정보 고지의무	대리·중개업자가 자신에 대한 주요정보(위탁 직판업자의 명칭, 전속여부, 체결권한 등)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줄 의무
자문규제	판매업자로부터 독립하여 자문을 수행하고, 거래관계가 있는 금융회사 공개,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금지 등

- (분쟁조정제도 개선)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 중지가 가능한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함.
- (과징금 제도 도입) 판매행위 규제 위반을 통해 형성한 부당이득을 환수함으로써 범위반 행위를 강력히 제재함.
 - 법인¹¹⁾인 금융상품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금전적 제재의 필요성이 있는 규제위반 행위¹²⁾에 대해 당해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영업이익의 3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함.

다. 영향 및 평가

- 「금융소비자법」의 규제 강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동법의 제정에 따라 보험산업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 「금융소비자법」은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감독기반의 형성이며, 현행 개별 「금융업법」에서 인정하는 판매채널 및 영업범위의 규제 수준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님.¹³⁾
 - 향후 개별 타 금융업권의 환경 변화 또는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대두에 따라 규제 강도를 높일 경우 보험산업에도 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별 금융업법과의 상충 문제 해소라는 소극적 차원에서 「금융소비자법」에 규정한 판매행위 규제와 중복되는 규정만을 개별 금융업법에서 삭제함에 따라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11) '개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

12)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금지 의무 위반, 구속성상품계약 체결금지 위반, 광고규제 위반, 미등록자에 대한 상품판매 위탁금지 의무 위반.

13) 연태훈(2010),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개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기본방향 토론회』.

-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금융소비자법」에서 일체의 금융 상품 판매와 관련한 제반 영업행위를 체계적이고도 일관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 개선 방향이 요구됨.

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공표하고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함.
 - 동 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조치 마련,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강화,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개인정보유출통지제도·집단분쟁조정제도 및 단체소송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규정이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외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다 확대됨.
 -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¹⁴⁾에 의하면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됨.
-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수령과 관련하여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보험회사에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되는 것임.
 - 보험회사는 동의사항을 필수 사항과 선택적 사항으로 구분하고, 기존의 「신용정보법」에 따라 수령하지 않았던 개인정보 수집동의도 수령해야 함.
 - －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 가능한 정보를 일반정보, 민감정보, 식별정보로 구분하였으며, 일반정보 수집 시 동의를 수령해야 함.

1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한편, 민감정보와 식별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규정 등을 제외하고는 처리 및 수집을 금지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새로이 도입됨.
 - 개인정보파일의 구축·확대 등이 개인정보 보호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자율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됨.
 -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그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동일·유사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개인정보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함.

5. 자본규제 및 시스템리스크 관리 강화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2011년 서울총회(9. 26~10. 1)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개되어 온 금융규제에 관한 세계보험감독자들의 논의가 있었음.
 - IAIS는 서울 총회에서 보험핵심준칙(ICP: Insurance Core Principles)의 전면 개정안을 채택하였고, 글로벌 보험그룹에 대한 평가기준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의 식별 및 감독에 관한 이슈를 논의하였음.
- IAIS는 개정 ICP를 일괄 승인하고, 시스템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다국적 보험그룹에 대한 공동감독체계(ComFrame)와 SIFI 지정 및 감독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함.
 - IAIS 서울 총회에서는 일괄 승인된 개정 ICP를 토대로 각국의 자체평가와 동료국 간 상호평가를 2012년 3월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함.

- 개정 ICP에서는 지급능력과 관련하여 내부통제를 포함한 위험관리가 강조되고 보험계약에 관한 가치평가원칙이 정비되며, 거시건전성 감독·청산·감독자 간 협력 및 국경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새로 추가됨.
 - 한편, IAIS 서울 총회에서는 다국적 보험그룹에 대한 공통감독체계의 완료 목표시점인 2013년 7월까지 로드맵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힘.
 - 공통감독체계는 적용의 범위, 보험그룹의 구조 및 사업범위, 양적 질적 요건, 감독자 간의 협력 및 감독자와 보험그룹 간의 상호작용, 감독관할 등 총 5개의 모듈(Modules)로 구성됨.
 - 또한, IAIS 서울 총회에서 글로벌 SIFI(G-SIFI) 선정을 위한 6개 기준을 토대로 2012년 6월까지 자료 분석을 완료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합의함.
 - IAIS가 제시한 6개 기준은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성 부족이라는 기존의 3가지 기준 외에 복잡성, 글로벌 영업수준, 비전통형 사업행위의 기준 등이 추가됨.
- IAIS 서울총회의 논의에 따라 향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로 지정되면 해당 보험회사는 기존의 자기자본규제 외에도 BISⅢ와 유사한 추가적 자본규제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됨.

6. 보험회사 공시대상 확대 및 개선

- 감독당국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하여 2012년부터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공시대상 항목을 확대함.
 - 감독당국은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제고 차원에서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에 보험회사별 불완전판매비율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감원은 2010년 5월 보험회사별 불완전판매비율을 공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결과 불완전판매가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2012년부터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불완전 판매에 따른 계약해지율,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금 불만족도도 공시하도록 규정함.
 - 향후 추가적으로 불완전판매 건수, 보험금 부지급 건수 등 세부자료를 보험회사별로 공시하도록 할 계획임.

〈표 II-5〉 보험회사별 불완전판매 관련 공시대상 확대

구분		내용
현행	불완전판매비율	신계약 건수 대비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 건수 비율
확대대상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신계약 건수 대비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건수 비율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금 청구 건수1) 대비 보험금 부(不)지급 건수 비율
	보험금 불만족도	보험금 청구 계약 건수2) 대비 계약 해지된 건수 비율

주: 1) 한 개의 보험계약으로 세 번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3건으로 계산함.

2) 한 개의 보험계약으로 세 번 보험금을 청구하여도 1건(계약)으로 계산함.

자료: 금감원 보도자료(2011. 7. 8),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등 공시대상 확대」.

- 감독당국은 보험상품 공시내용의 정확성을 추구하고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상품 관련 공시제도도 개선함.

- 표준순보험료¹⁵⁾ 대비 영업보험료로 산정해 온 보험료지수를 참조순보험료¹⁶⁾ 대비 영업보험료로 개정하여 보험료지수를 통한 보험료 수준의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보완함.

〈표 II-6〉 보험료지수 산출식 개선

구분		현행	개선
보험료지수		영업보험료 / 표준순보험료	영업보험료 / 참조순보험료
순보험료 산출 시 적용	위험률	표준위험률 (생명보험 12종, 손해보험보 1종)	참조위험률 (생명보험 46종, 손해보험 517종)
	이율	표준이율	표준이율

자료: 금감원 보도자료(2011. 11. 23), 「보험상품 공시제도 개선방안」.

- 변액보험 펀드 분류체계를 금융투자상품 펀드 분류체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개선함으로써 투자자들이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변액보험 펀드가 금융투자상품 펀드와 유사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주식투자 비중과 애매한 펀드유형 분류 등으로 공시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운전경력, 사고경력 등 개별 운전자 특성을 반영하여 실제 보험료 비교가 가능한 소비자 맞춤형 자동차 보험료 조회시스템을 구축함.
 - 현행 자동차 보험료 조회시스템의 경우 실제 보험료 산출 개념이 아닌 자신의 가입조건과 비슷한 유형의 회사별 자동차 보험료 수준을 안내하고 있음.
- 공시 관련 보험회사 담당자의 인식 부족, 사전검증체계 미비 등으로 공시 내용에 오류가 존재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내·외부 검증절차 신설, 공시담당자에 대한 주기적 교육 등을 통하여 정확성을 높임.

15) 보험회사가 적립할 최소한의 책임준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해 금감원장이 정하는 표준이율 및 표준위험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순보험료를 의미함.

16)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 전체 경험통계를 기초로 산출하여 금감원에 신고한 위험률을 말함.

- 상품공시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에 표기하고 보험상품 안내화면과 상품공시실을 링크하는 등 접근성을 제고하며, 공시화면 확대 등 이용자 편의성도 제고함.

〈표 II-7〉 공시관련 제도 개선 추진일정

추진과제	필요조치	시행계획
1. 보험료지수	감독규정 개정	2011년 12월 (2012년 4월 시행)
2. 변액보험의 펀드분류체계 개선	상품공시기준개정	2011년 12월 (2012년 6월 시행)
3. 소비자맞춤형 자동차 보험료 조회시스템 구축	협회 시스템	2011년 12월
4. 상품공시내용의 정확성 제고	-	-
- 내외부 검증절차 마련	감독규정· 상품공시기준 개정	2011년 12월 (2012년 4월 시행)
- 공시담당자 교육	유관기관 협의	2011년 12월
5. 공시내용의 편의성 제고	유관기관 협의	2012년 6월

자료: 금감원 보도자료(2011. 11. 23), 「보험상품 공시제도 개선방안」.